

<p>안키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.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.</p> <p>同僚議員 여러분, 아무쪼록 本議員이 제안 설명하여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</p> <p>○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제안한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이의 없습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	<p>34. 서울特別市地下道商街管理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35.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關한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(14時 52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特別市地下道商街管理條例案, 의사일정 제35항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關한條例案,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같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
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종류 및 공연) ①다음 각호의 공연을 위하여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·합창단·청소년 교향악단·소년소녀합창단·국악관현악단·가무단·무용단·오페라단 및 극단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기공연 2. 기획공연 3. 분수대광장축제(4월~5월, 9월~10월) 4. 토요일상설무대 5. 지역순회공연 6. 해외공연 7. 기타공연 <p>②제1항의 공연중 제3호, 제5호의 공연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은 무료로 개최한다.</p> <p>제4조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에서 예술단체의 단원 위촉·공연등 운영에 관한 권한을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>1998년 4월 8일 건설위원회</p> <p>I. 심사경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일: 1998년 4월 1일 ○ 제안자: 서울특별시장 2. 회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부일: 1998년 4월 2일 ○ 의안번호: 1151호 ○ 근거: 의사 13130-138 3. 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정일: 1998년 4월 7일 ○ 심사: 제1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수정의결 <p>II. 제안설명요지(도로국장 임동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안이유 <p>우리 시 지하도에 설치된 상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</p> 2. 주요골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상가내 점포의 임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(안 제4조 및 제5조) (1) 임대 기간: 3년 이내 (2) 임차인선정: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·선정 원칙